

2020년 평택기지지사 통근버스 임차 과업지시서

2019. 11.



한국가스기술공사
KOREA GAS TECHNOLOGY CORPORATION

과업지시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지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통근버스(이하“차량”이라 한다)운행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의 직원 출·퇴근 업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직원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리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임차 기간 동안 투입된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운전기사의 급여, 사고처리, 과태료와 범칙금 등 차량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② 발주자는 차량운행 계획에 따른 근무요령 및 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제 규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차하며 운행시간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 수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기일 내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제 3 조 (차량)

- ①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및 운행기록증발급 현황¹⁾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임차기간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2대이며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16.1.7)

1. 2017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
2.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3.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차량
4. 차내에 구급함을 비치한 차량
5.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
6.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2대 이외에 2대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예비차 2대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 4대 원본 각1부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결과 통보서) 각 1부
 - 직영차량운행 각서 1부
 - 자동차등록증 4대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 보험가입증명서 4대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 (대인 : 무한, 대물 : 최소 1억원 이상 가입)

제 4 조 (운전원)

-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버스운전(4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어야 한다.
- ② 운전원은 운행시 발주자 탑승직원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안전운행관련 교육실시 등)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무사고 경력을 발주자의 요청 시 증명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원의 해직 등 인사발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자의 직원 통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운전원의 결행(결근), 안전운행수칙 미준수 및 불친절 등의 불미스러운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4명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경력증명서 4명 원본 각 1부
-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4명 원본 각 1부
- 운전원 재직증명서 4명 원본 각 1부

제 5 조 (자동차 보험)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당연히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 및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민·형사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운행)

- ①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운전원을 교체하여서는 안되며, 교체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운전원 결근 및 무단결행 등) 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운행 정지 등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 및 기사를 대체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 및 기사를 대체하여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 등)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중간정류장 마다 1명 이상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아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차고 및 배차담당자가 비치하도록 하며 운행약도와 함께 1부씩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운행 중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 할 경우 증차(현재 운행단가)를 실시하며, 그밖에 운행노선·운행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⑦ 경조사 및 행사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요청(최소 1일전)이 있을 시 상호 협의 후 전지역 대상 연간 4회(왕복)에 한해 통근버스를 지원한다.

제 7 조 (임차료 및 지급방법)

-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차량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차종	대수	임차료	비 고
대형45인승	2		수원노선 1대, 평택노선 1대

※ 연간 운행 횟수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임차료의 산출내역(연간, 월별, 노선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를 포함한 금액이다.
- ④ 계약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탑승 직원 중 1인 이상에게 운행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 후 운행확인표 원본을 도착 즉시 제출 하여야 하며, 월말 임차료 청구시 운행확인표 회사보관용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근노선 운행확인표는 다음 출근노선 운행확인표와 같이 제출한다.
- ⑤ 제4항의 운행확인을 받지 못한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임차료의 환수)

임차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금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종료시점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각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연장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제 10 조 (운행노선 및 휴일)

- ① 일일 운행횟수는 2회로 하고, 출퇴근 노선은 아래와 같으며 출근 시간 08:40분전에 도착하고, 퇴근시간은 18:10분으로 한다.

□ 수원노선

구분	승차위치	승차시간	비고
1	수원역	07:15	출발
2	권선중학교	07:23	수원 권선사거리
3	안중오거리	08:05	서울외과병원 앞 버스정류장
4	동신3차아파트	08:10	안중읍 동신3차아파트 앞 정류장
5	늘푸른아파트	08:11	안중읍
6	현대2차·건영아파트	08:12	안중읍
7	내거리정류장	08:16	내거리 삼거리
8	회사(가스기술본관앞)	08:40	도착

※ 퇴근노선은 출근노선의 역순으로 운행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 평택노선

구분	승차위치	승차시간	비고
1	용이동 푸르지오아파트	07:11	출발(용이동)
2	동일공고	07:16	버스정류장
3	뉴코아	07:17	
4	소사벌	07:20	경기마트
5	평택여중사거리	07:30	산업은행 앞
6	평택 복지관	07:37	평택 복지관 앞
7	세교동 정류장	07:42	중앙초 버스정류장
8	태평아파트	07:53	버스정류장
9	삼부르네상스아파트	08:20	포승사택
10	회사(가스기술본관앞)	08:40	도착

※ 퇴근노선은 출근노선의 역순으로 운행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 ② 발주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노선(차량)을 변경(증차)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일부 노선의 변경 등으로 운행거리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편도 10Km 이내의 변동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기존단가로 운행한다.
- ④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사고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 중 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 하여야 하고, 만약 발주자가 손해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배상조치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위 제1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임차료에서 우선 공제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시 불미한 사례로 발주자 직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의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였을 때 손실 전액을 발주자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 등 여타한 책임을 총괄하여 수임한다.

제 12 조 (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노선을 결행할 경우 임차료는 당연 지급하지 않으며, 편도 결행의 경우 임차료를 일할계산(월23일기준)한 금액의 2배, 왕복 결행할 경우 3배로 계산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월임차료에서 감액한다. 단, 대체 운행 시에는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② 발주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행될 경우 과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일할계산 한 금액의 50%를 공제하며, 발주자의 직원

1인 이상의 확인이 있을 시 유효하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공행사 등 발주자가 결행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과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최초 출발지 또는 정차지점에 과실 또는 고의로 20분 이상 지연 도착하거나 지연 출발할 경우
 2.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또는 정차 시간을 지키지 않고 선 출발할 경우
 3. 정비불량 및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되지 못할 경우
-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결행 및 차량운행 지체 시에는 발주자는 임의로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실비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위 제3항의 차량 결행 및 차량운행 지체로 인하여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용자의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제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개인에게 해당금액을 개별적으로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차운행)

- 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 회사의 차량으로 한시적으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2일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위 제1항의 대차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의 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 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 ③ 대차버스를 운행 시에는 제3조에서 정한 차량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임차료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에서 차감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1.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보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월2회 이상 무단 결행하여 발주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7.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8. 제6조 제2항의 운전원을 임의로 3회이상 교체한 경우
-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내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0년 평택기지지사 통근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영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각 1부

2019.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별표2] 은행 확인서 양식

통근버스 은행확인표(보관용)					
은행업체 보관용					
운행일자		차량번호			
노선명		운전자성명			
운행구간 (시간)	출발지	도	착지		
	출발시간	도	착시간		
운행구분	출근	퇴근	승차인원		명
	출근	퇴근	승차인원		명
확인자서명	부서		이름		
	부서		이름		
주의사항					
<p>1. 운행도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은행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 미원수내용을 발주자의 승차직원 확인을 받아 우리공사 통근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승차인원 및 출발, 도착시간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p> <p>3. 은행확인표 미제출시 결행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통근버스 은행확인표(제출용)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출용					
운행일자		차량번호			
노선명		운전자성명			
운행구간 (시간)	출발지	도	착지		
	출발시간	도	착시간		
운행구분	출근	퇴근	승차인원		명
	출근	퇴근	승차인원		명
확인자서명	부서		이름		
	부서		이름		
주의사항					
<p>1. 운행도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은행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 미원수내용을 발주자의 승차직원 확인을 받아 우리공사 통근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승차인원 및 출발, 도착시간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p> <p>3. 은행확인표 미제출시 결행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